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관

1999.12.03. 제정
2000.11.11. 개정
2002.11.16. 개정
2004.11.05. 개정
2006.11.11. 개정
2007.10.05. 개정
2010.11.06. 개정
2022.12.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건설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로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KICEM)”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건설관리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학회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관리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 기반의 구축 및 보급
2.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을 통한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전문 기술·경험·지식·정보의 교류와 교육을 통한 건설관리 분야의 저변확대
4. 국가간 기술 교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관리 지식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 건설관리 기술에 관련한 연구개발 용역 및 기술자문
3. 건설관리에 관한 학술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4. 전문 학회지 및 논문집 발간
5. 건설관리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배포
6. 관련분야 전문 서적의 저작 및 번역 등 출판사업
7. 건설관리 관련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8. 건설관리 관련 분야의 회원 상호간 협력증진
9. 건설관리 기술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 사업
10. 기타 본 학회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및 지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 회원
2. 일반회원
3. 학생회원
4. 명예회원
5. 특별회원
6. 단체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 일반회원 중 학회가 정하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된 사람.
2. 일반회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3. 학생회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학생회원은 입회 후 그 자격이 일반회원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킬 때 학회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로서 학회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5.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
6.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건설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7조 (회비)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단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제명) 학회는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정지, 복권 및 상실)

1. 본 학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3.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에 대해서 본 학회는 회원자격의 상실을 고지할 수 있다.
4.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연회비 불입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 (탈회) 본 학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사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회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2인 이내 (단, 1인은 당연직 부회장이며 지회장 중 1인으로 한다)
3. 이 사: 60인 이내
4. 감 사: 2인
5. 고 문: 10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정기총회 인준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만료 해당년도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3. 회장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없으나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1. 회장은 학회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며, 부회장, 감사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일반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고문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4. 임원의 선출을 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고문은 본 학회 주요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위원회)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6조 (사무국)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의 지도 하에 학회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인준
3. 사업계획의 인준
4. 임원의 인준
5.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19조 (총회의 의제)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회원 100분의 5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 (총회 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자신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질 때 이에 관한 학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에 대한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 및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회비의 책정 및 징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승인과 포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9.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 소집, 의결정족수)

1. 정례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재적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4.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제24조의 조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개인/단체)의 회비
2. 논문회비
3. 학회의 수익사업

- 4. 기여금, 수탁 용역의 수익금
- 5. 기타 수입

제28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정관 개정과 해산

제30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 (잔여 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 부 칙 -

1. 본 학회의 정관 중 미상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을 정한다.
2. 제17조의 1항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2년 01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4년 0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6년 0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8년 01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